

2025년 제2회 김해연구원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결과 공고

2025년도 제2회 김해연구원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재단법인 김해연구원장



1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직종	직급	구분	수험번호	성명
행정직	5급	최종합격자	HA0003	이*경
		예비합격자	HA0007	김*진

※ 채용 홈페이지(<http://gimhae.k-job.kr>) 접속 후 응시 결과 확인

2 임용예정자 등록

가. 등록기간: 2025. 6. 23.(월) ~ 6. 25.(수) 18:00까지

※ 근무시간 내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등 록 처: 김해연구원 경영지원실(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다. 등록방법: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직접 등록

라. 제출서류(원본제출)

- 임용예정자 등록원서 1부. (첨부서식)
- 이력서 1부.(첨부서식)
- 졸업(학력)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없는 경우 경력 미인정)
 - 1) 근무기간(상근여부 또는 주 근무시간 포함), 근무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서명(날인) 후 발급기간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 2) 경력증명서에 주 근무시간 명시 안된 경우: 주 근로시간이 명시된 계약서 첨부(계약자와 증명서 발급기관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정)
 - 3)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4) 응시원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상호 교차 검증하여 공통된 유효경력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급여통장 사본 1부
- 명함판 사진 2매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가능,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한 후 검사 바람**
(검사 시 사진 2매 필요, **발급기간 2일 정도 소요**)
 - ⇒ **신체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 필요** (검진기관에서 실시)
 - ⇒ 6개월 이내 검사받은 사항을 재발급하여 제출 가능
 - ⇒ 채용 신체검사서에 한하여 임용 후 제출 가능(단, 불합격시 임용 취소)
 - ※ 2년 이내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제출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서식)
-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 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1부.(첨부서식)
- 비위면집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첨부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

3

임용예정자 유의사항

- 가. 임용예정자가 임용예정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으로 기간 내 반드시 임용후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임용예정일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채용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직 등으로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대로 임용(임용사유 발생시 개별통보) 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임용예정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김해연구원(☎055-359-8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용예정일

- 가. 임용예정일: 2025. 7. 1.(화) 예정 (대상자 개별 통보)

임 용 후 보 자 등 록

[인적사항]

- | | |
|-------------|----------|
| ○ 응시직종 : | ○ 응시분야 : |
| ○ 응시직급 : | ○ 응시번호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김해연구원 직원 채용에 합격하였기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채용대상자로 등록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임용예정자 등록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졸업(학력)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급여통장 사본 1부
- 명함판 사진 2매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서식)
-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 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1부.(첨부서식)
- 비위면집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첨부서식)

20 . . .

임용예정자 : (인)

이 력 서

직종		직급	
----	--	----	--

1. 인적사항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E-mail)

2. 학력사항			
학교명	재학기간(년월일)	전 공 (세부전공)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3. 경력사항 (채용분야 관련 경력만 기재)				
근무기간(년월일)	근무기관(부서)	근무형태	최종직위(급)	담당 업무

기 타 실 적	명칭(자격, 특허, 어학 수상 실적 등) 및 내용	기관 및 일자	기 타

※ 경력, 기타실적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자료만 작성하고, 채용분야 관련 경력만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6월 일

_____ (서명)

재단법인 김해연구원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김해연구원 직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김해연구원장 귀하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재)김해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직원 채용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사오니 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응시자 본인 확인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합격통지 및 안내 등에 활용	
응시원서, 경력·경험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증빙서류	채용절차 진행 전반에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최종합격자 선정절차에 한해 취급)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 채용과정 내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 확인 ▶ 신원조사·신원조회 등 조회 기초자료 확보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각종 자격번호		
등록기준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최종합격자 선정절차에 한해 취급)

제공처	제공목적	제공항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찰청, 검찰청	범죄경력(결격사유) 조회	주민등록번호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감사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감사 및 징계전력 자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재)김해연구원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본인은 (재)김해연구원 직원 채용을 위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임용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월 일

작성·확인자: (서명)

(재)김해연구원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4 1 월 일
지 원 자

(서명)